'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' 사업 2025년도 제2차(재공고)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

「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근거하여 대형산불 예측·진화 관련 AI 등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2025년도 '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' 사업의 제2차(재공고)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12일 산림청장

< 목 차 >

- 1. 공모분야
 - 가. 기술지정 공모과제
- 2.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
 - 가.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
 - 나.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 참여 제한 사항
- 3.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접수
 - 가.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
 - 나. 연구개발과제 접수
- 4. 연구개발비의 출연, 부담 및 계상
 - 가. 연구개발비의 출연 및 부담 기준
 - 나. 연구개발비의 계상 기준
- 5.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기준 및 절차
 - 가. 선정평가 및 선정 확정 절차
 - 나. 선정평가 기준
- 6. 기타 세부 참고사항
- 7. 문의처

1. 공모 분야

가. 기술지정 공모과제 [1개 과제, '25년도 1,000백만원]

- 협약 기간은 해당 공모과제의 총 연구기간으로 함
- ※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구서(RFP, 붙임1)를 참고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(불임2)
- ※ 과제별 예산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RFP	[내역사업명]	총 연구기간	지원한도 (백만원)	
번호	공모과제명	[당해 연구기간]	당해	총
	합 계		1,000	1,000
1	[한국 산악지형 특화 산불진화 기술 맥시멈(Maximum) 스케일업(Scale-up)] - 현장 대응형 산불진화 기술 개발·실용화	['25. 7.~'25. 12.] (6개월) ['25. 7.~'25. 12.] (6개월)	1,000	1,000

2.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

가.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

- (연구개발기관) 산업체, 대학, 국·공·출연 연구기관 등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·단체 중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6조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기관
 - 제안요구서(RFP)의 신청자격 및 연구팀 구성요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,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분야가 아닌 분야간 융복합 및 산학연 구성 권장
 - 동일한 과제 내 주관/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하여야 함
- (연구자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제3호의 기관·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, 제7조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

나.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 참여 제한 사항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에 따라 **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개인**
- ※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 하려면 **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**되어야 함
- 접수 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신규 과제를 신청할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
 -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12조에 따른 연차/단계/최종보고서 미제출
 - 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18조에 따른 기술료 미납
 - ③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83조에 따른 정산 회수금 미납
 - ④ 「혁신법 시행령」제26조에 따른 정산 사용실적보고서* 미제출
 - * 직전년도(2024년)까지의 종료과제에 대한 사용실적보고서
 - ⑤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에 따른 환수금, 제재부가금 미납
- ※ 과제 신청을 위해서는 접수 마감일시까지 의무 불이행을 종료(완납)해야 함
- 연구개발기관(영리기관)이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
 - ①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 -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「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제28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직무를 관장하는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
 - ※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: 국립산림과학원, 국립수목원

○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,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,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※ 신청 당시 3책5공에 위배되지 않았으나, 협약 체결일 기준 3책5공 초과되는 경우 협약 불가

<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>

구분	연구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개발기관(과제)	연구책임자(책)	ᄽ여여그다(고)
공동연구개발기관(과제)	참여연구자(공)	참여연구자(공)

- ※ 위탁연구개발기관은 3책5공 제외되며, 그 외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 제3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
-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, 임기만료 예정일, 인사이동 계획,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
 - ※ 연구개발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중단 및 제재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3.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접수

가.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일체(**붙임2**)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접수 완료
 - ※ 제안요구서(RFP) 상 연구내용을 포함하되, 연구목표와 목표성과 도출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가능
- 성과목표는 RFP 상 '목표성과'에 제시된 목표를 포함하여 작성
- 본 사업의 공모과제는 단계로 구분되지 않으며, 협약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
- 기술지정 공모과제의 제안요구서(RFP)에 제시된 과제명은 변경할 수 없음
- 공고문 및 제안요구서(RFP)에 명시된 연구개발비·연구기간 미달·초과 시 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연구기간은 7월 1일 시작. 당해연도 12월 31일 종료를 원칙으로 함
-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및 연구목표에 맞춰 주관/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, 각 연구개발기관별 예산을 배분
 - 각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특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※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과제에서 주관/공동/위탁 중 하나의 유형으로만 수행 가능
 - ※ 제안요구서(RFP) 상 연구팀 구성요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, '참여 필수' 기관이 있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- 연구 시설·장비 심의요청서
 -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단일 연구시설·장비를 구입·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(붙임2)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 시 대면평가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음
 - ※ 평가 실시 전 연구시설·장비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나. 연구개발과제 접수

- 공고기간: 2025년 6월 12일(목) ~ 2025년 6월 23일(월) 14:00까지
- 접수기간: 2025년 6월 12일(목) ~ 2025년 6월 23일(월) 14:00까지
- ▶ 연구개발과제 접수 마감시간 엄수(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)
- ※ 접수 기한 내 접수완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► 접수 마감일시까지 IRIS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어도, 주관연구개발기관 '승인'이 완료되지 않으면 '접수 완료'되지 않으며, 접수 마감일 당일 서버 과부하로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 및 마감 2~3일 전 접수 완료 권장

○ 접수방법

- 주관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iris.go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 제출(우편, 메일 제출 불가)
- (접수 전) IRIS 로그인 → 알림·고객 → 공지사항 → '☆[안내]연구개발 과제 접수 전 연구자 필수 이행사항'확인
- (매뉴얼) IRIS 로그인 → 알림·고객 → 자료실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온라인매뉴얼 '바로가기' → [IRIS R&D업무포털-연구자용] 과제접수 매뉴얼 확인
 - ※ 공고 및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
○ 제출서류

-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일체
- 주관/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
- (해당 시) 가점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
 - ※ IRIS 신청 시 해당하는 가점 항목에 체크하여 제출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가점에 대한 증명자료를 검토하며, 가점 항목에 체크하지 않고 증명자료만 제출한 경우 가점 불인정
- (영리기관 필수)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기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제출
 - ※ 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

※ 접수 유의사항

- ① 주관/공동/위탁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원은 사전에 IRIS 회원가입 후 국가 연구자정보시스템(NRI)에 접속하여 연구자전환 동의 및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함
- ② 모든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접수 전까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(NRI)에 학력 및 경력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
- ③ 주관/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IRIS시스템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하며, 과제접수 중 기관정보변경 및 기관성과정보 등록하였을 경우 '(업무포털)기관 정보동기화'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정보 동기화 하여야 함
- ④ IRIS시스템 접수 시 회원가입, 기관등록, 정보입력,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
 - * 접수 마감일은 서버 과부하에 따른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~3일 전 접수 완료 권장
- ⑤ 전체 정보 입력 후 "최종확인"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검증 후 종료시간 전에 "제출" 버튼을 클릭한 과제만 제출 인정됨.
- * 접수 마감 직전 검증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,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과제접수 진행 권장
- ⑥ 연구개발과제의 제출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가능함

4. 연구개발비의 출연, 부담 및 계상

가. 연구개발비의 출연 및 부담 기준

○ 연구개발기관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「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」에 따른 기관부담연구 개발비(현금 및 현물)를 계상하여야 함

── <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상 대상 > ─

-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②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- 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
-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- 위의 대상에도 불구하고, 연구개발기관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

── <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상 예외 적용 > -

- ①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
 - ※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귀속 여부는 제안요구서(RFP)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②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
- ③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·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
 - ※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16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)에 따라 연구 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

나. 연구개발비의 계상 기준

○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0조(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)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

○ (인건비)

-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, 기타비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인건비 현금을 계상할 수 없음
-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에게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6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

○ (연구활동비)

- (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) 영리기관에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 기준」제10조에 따른 연구실 운영비를 계상하려는 경우, 제68조에 따라 협약 체결 당시 [별지 제4호]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·관리계획을 작성하여 (협약용)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
- (외부 전문기술활용비)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% 이내로 사용하여야 함
- (위탁정산수수료)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으로,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매년 연구활동비 내 그 밖의 비용으로 계상
- ※ 「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[별표 제3회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름
- (연구수당)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
- (위탁연구개발비)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위탁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고,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

○ (간접비)
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37조, 제46조, 제55조, 제63조에 따라 기관 유형별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함

- ※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은 「국가연구개발시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114조에 따름
- ※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 비율은 연구개발과제(단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)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(성과활용지원비)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함
-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26조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정산 결과에 따라 통보받은 회수 대상 금액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납하여야 함
 - ※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함
- 그 외 위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사항 또한 「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

5.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기준 및 절차

가. 선정평가 및 선정 확정 절차

	「 옷 신성 뇍성 열사 	
절 차	내 용	일정 /방법
공고 및 접수	○ 혁신법 제9조(예고 및 공모 등)에 따라 공고하며, 「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제12조에 따라 재공고함	'25.6.12. ∽6.23., 14:00
사전검토	○ 접수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3책5공, 의무 불이행, 재무정보, 제재정보, 제출서류 등 확인 ※ 부적격 과제 통보(6.25)	6.24.∽ 6.25.
서면평가	○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으로 온라인 서면평가 ※ 접수된 과제수가 공모 과제수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, 서면평가 점수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 과제를 3배수 선별하고,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배수와 관계없이 탈락 ※ 서면평가 결과 통보(6.27)	6.26.∽ 6.27.
대면평가	○ 대면 발표평가 (세부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) ※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※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	7.1. /대전
평가결과 심의	○ 산림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심의 ※ 서면·대면 평가결과, 가점·감점 적용, 동점과제 우선순위 처리 등 심의	7.2.~ 7.3.
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	 ○ 선정 결과 통보(7.4) 및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※ 이의신청 범위 -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- 연구개발과제(연구업적 등)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-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-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	7.4.~ 7.14.
협약체결	○ 수정·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	~7월

- ※ 내·외부 사정에 따라 절차, 일정 및 평가 장소는 변동 가능
- ※「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지침」제12조~제16조에 따름

나. 선정평가 기준

- 근거 : 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 및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(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 및 제27조(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),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(공모 및 신청) 및 제14조(선정평가)
-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신청한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 수행여부를 결정함
- 연구개발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, 신청자격 요건 및 중복성 검토 후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
- 선정평가는 온라인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로 실시
 - 접수 완료된 과제수가 공모 과제수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, 서면평가 결과 서면평가 점수(가감점 미포함)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 과제 3배수 선별
 - ※ 공모 과제별 경쟁률 비공개
 -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배수와 관계없이 탈락으로 처리 하고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
 -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가점수는 서면평가 점수와 대면평가 점수의 평균점수에 「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[별표]에 따른 가점·감점을 적용하여 산출
 -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약 대상 과제를 선정함
 - ※ 「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제14조에 따름
- 종합평가점수 동점과제의 우선순위 처리 기준
 - 1)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
 - 2) 서면평가 점수와 대면평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과제
 - 3) 배점이 높은 선정평가 항목의 평균점수가 높은 과제
 - 4) 1)~3)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재평가 실시

- 선정평가 결과,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할 경우,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
 - ※ 다만, 차순위 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
 - ※ 차순위 과제가 없거나 차순위 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적격한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함

○ 선정평가 배점기준

평 가 항 목	배 점
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	25
②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	20
③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·기술적·사회적·경제적·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 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	20
④ 산림 관계 법령 [*] 및 출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*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	20
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와의 차별성	15
소 계	100

○ 선정평가 가·감점 기준

- 가점 항목(항목별 중복가산은 적용되지 아니하고,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)

7日 0 八 0 7 C 0 7 7 C C 7 0 7 7 7 7 7 7 7 7 7 7				
구분	가점 내용	가점	적용기간 (적용기산일)	제출서류 예시
가	소관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 '우수'로 분류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 는 경우	5점	2년 (최종평가 결과 통보일)	연구개발계획서, '우수' 평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, 평가결과 통보내역 등
나	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	3점	3년 (연구개발 협약 종료일)	보안과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, 협약서 등
다	소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로 실시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이거나, 2건 이상의 유상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과 제를 신청하는 경우	3점	3년 (기술실시 계약 체결일)	연구개발계획서, 기술이전계약서, 기술료 실적 증빙서류 등
라	과학기술 분야의 훈장, 포장,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 가 응모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	3점	3년 (포상일)	관련 증서
마	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 된 기업이 응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응모한 과제	3점	3년 (인증일)	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등
바	자체 기술 혹은 기술실시한 제품이 「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에 따라 '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응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	3점	3년 (인증일)	연구개발계획서,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
사	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제1 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응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	3점	유효기간 내	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, 농업경영체 확인서,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증빙서류 등
아	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응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	2점	유효기간 내	중소기업확인서,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자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또는 같은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임업 후계자 또는 같은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독림가를 참여연구원으로 포함하는 과제	2점	유효기간 내	임업인 증명서, 임야경영체 등록 확인서, 임업후계자/ 독림가 확인서,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증빙서류 등

^{※ &#}x27;소관 연구개발과제'는 「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산림청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함

- ※ IRIS 접수 시 해당하는 가점 항목에 체크하여 제출 완료한 경우에만 가점 증빙을 검토하며, 가점 인정을 위해서는 신청한 항목에 대한 적격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- 감점항목(최대 10점 이내로 부여)

구분	감점 내용	감점	적용기간 (적용기산일)
차	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	10점	3년 (처분일)
카	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	5점	3년 (협약해약일)

6. 기타 세부 참고사항

○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응모, 평가, 협약, 과제수행 등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법규, 지침 및 매뉴얼 등의 해당사항을 준용

붙임 순번	법규, 지침 및 매뉴얼 명
3-1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
3-2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
3-3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」
3-4	「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」 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[별표1])
3-5	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
3-6	「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
3-7	「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
3-8	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
- (서류반환)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(연구노트)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」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○ (부정행위의 금지)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1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

<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>

-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 정행위(이하 "부정행위"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・변조・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
- 2.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
- 3.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 게 한 행위
- 4.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-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1.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·조치가 불가능한 경우
- 2.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,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·조치·보고의 내용·절차,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·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(진도관리) 연구개발과제 추진 현황 확인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연차보고서 검토 등 진도관리를 실시하며,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 - ※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, 진도관리 결과는 향후 단계평가·최종평가에 반영됨
 - ※ 1차년도에는 선정평가 의견 반영 여부, 정책 연계성, 추진 방향 등 점검 예정
 - ※ 과제별 연계성이 높은 과제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으로 연구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,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참여해야 함
- (안내발송) 선정평가 관련 안내사항은 IRIS R&D업무포털 전자알림 및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핸드폰 SMS,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므로, 사전에 IRIS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현행화
 - ※ IRIS 등록정보 미확인 및 오기재로 인한 접수·평가 알림(SMS, 메일) 미수신 등 문제에 대한 귀책은 신청기관(책임자)에 있음

7. 문의처

문의 구분	연락처 및 유의사항
공고내용 및 신청서류 작성	○ R&D실용화실 : y40579@kofpi.or.kr, 042-719-1408 ※ 가급적 이메일 문의를 권장
IRIS시스템 회원가입 및 입력·등록 방법	 ○ IRIS 고객센터: 1877-2041, 042-862-1500 (평일 09:00~18:00) ※ 접수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유선문의 폭주에 따른 신청서류 제출 미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책이 없으므로, 사전 제출 완료 권장 ○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또는 챗봇

- 붙임 1. 기술지정 과제 제안요구서 (RFP) 1부.
 - 2.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양식 일체 1부.
 - 3. 관련 법규, 지침 및 참고 매뉴얼 일체 1부.
 - 4. IRIS 관련 매뉴얼 1부. 끝.